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 12. 2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승 관**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마포구청장
- 나. 제 출 일 : 2009. 11. 16
- 다. 위원회회부 : 2009. 11. 19
- 라.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

2. 개정이유

주관부서장이 용역설계 및 공사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일관성 및 전문성에 기여하고, 자문단의 간사와 서기를 현행 실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자문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현행 간사인 “건설교통국장”을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토목과장”을 주관부서 팀장 “으로 조정 (안 제11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상 표현 변경 및 용어 순화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개정문안 : 따로붙임
 -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9.10.08 ~ 10.28) 결과, 의견제출 없음

5. 조례안 검토사항

- 본 개정 조례안은 용역설계 및 공사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일관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문단의 간사와 서기를 현행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며, 제명 등 각종 용어를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문구를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① 삭제 <2001.7.30>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③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3.12>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7.30, 2005.6.30, 2005.12.30, 2006.5.25, 2006.12.29, 2008.12.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6.12.29>

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⑥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8.13]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관한조례

[1996. 6. 1 조례 제327호]

(일부개정) 1998.09.30 조례 제 393 호

(일부개정) 2008.01.07 조례 제 692 호(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복잡하고 대형화된 도시기간시설의 안전진단,건설공사의 설계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시 적기에 관계전문가의 체계적인 기술적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제2조 (기능)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시설의 안전진단,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사항
2.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용 시설물의 공사설계시행의 적정성 여부 및 그 공법의 타당성
3. 공사추진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여 자문의뢰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의뢰한 사항

제3조 (구성)①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2. 도로,구조,토질 및 기초,환경,교통,상·하수도,건설안전,조경,건축,기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건설기술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임기)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문단회의)①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단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분야별 위원의 전문적 기술성을 고려하여 의결방법은 채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동일사안에 대하여 전문기술적인 의견의 상충·대립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의결한다.

④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등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문방법)①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①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보고)자문단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등)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출석위원의 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서기는 토목과장이 된다.(개정 98.9.30)

제12조 (수당 등 지급)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현장 출장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및 자문단 구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및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로 한다.

⑭ 내지 (16) (생략)